제1601호
2019. 5. 23.(목)

발 행 인 :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 집 인 : 홍보전산과장 김 미 자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 작 구 보

차 례

◎ 고 시
제2019-1호 : 상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1
◎ 공 고
제2019-610호 : 『2019.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6
제2019-614호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7
제2019-615호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알림 공시송달 공고---------- 9
제2019-616호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1
제2019-623호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12
제2019-627호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3
제2019-628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제2019-637호 : 설계공모 공고---------- 28
◎ 인사발령 ---------- 30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작 구

고 시

◈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고시 제2019-1호

상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41호(2007.09.27.)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38호(2010.05.3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62호(2015.08.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108호(2018.12.06.)로 공사완료 된 상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02-811-77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3일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김광수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상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 외 6필지(확정지번 : 상도동 903 외 5필지)
   나. 면적 : 44,103.2㎡

3.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광수)
   나. 주소 : 서울 동작구 만양로 11, 302호(상도동, 대화빌딩)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년 8월 19일

5. 준공인가일 : 2018년 12월 3일

6. 이전고시 내역

가. 지번별 조서 (지적확정조서)

종전 지적의 표시 (폐쇄)					확정 지적의 표시 (시행)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상도동	17-2	대	1,120	1	상도동	903	대	39,429.3	
2	상도동	26-77	도로	131	2	상도동	903-1	도로	455.1	
3	상도동	34-29	대	109	3	상도동	903-2	공원	1,720.2	
4	상도동	36-1	대	42,447	4	상도동	903-3	공원	2,090.3	
5	상도동	36-9	대	79	5	상도동	903-4	도로	182.2	
6	상도동	36-47	도로	139	6	상도동	903-5	도로	226.1	
7	상도동	36-56	대	45						
계	**7필**			**44,070**	**계**	**6필**			**44,103.2**	

나. 토지의 용도별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소유자	비고
1	상도동	903	대	39,429.3	이전고시조서 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상도동	903-1	도로	455.1	동작구 (1124)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3	상도동	903-2	공원	1,720.2	동작구 (1124)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4	상도동	903-3	공원	2,090.3	동작구 (1124)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5	상도동	903-4	도로	182.2	동작구 (1124)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6	상도동	903-5	도로	226.1	동작구 (1124)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계				**44,103.2**		

다. 건축시설 내역

①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9층, 아파트 9개동, 8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② 건축면적 : 7,452.4565㎡(건폐율 : 18.9%)

③ 연 면 적 : 141,262.7372㎡(용적률 : 244.24%)

④ 건물명칭 : 이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라. 건축시설 규모

공급대상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계	59A	59B	59C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84J	108
계	**893**	**181**	**17**	**55**	**234**	**169**	**63**	**48**	**12**	**12**	**16**	**18**	**6**	**6**	**56**
토지등 소유	467	110	12	33	107	76	24	23	-	4	7	12	2	2	55
보류시설	13	1	3	1	2	3	-	1	-	-	2	-	-	-	-
일반분양	408	67	2	19	125	90	39	24	12	8	7	6	4	4	1
소형주택 (임대)	5	3	-	2	-	-	-	-	-	-	-	-	-	-	-

공급대상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급호수
토지 등 소유자	19
일반분양	4

마.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주택세대별 면적(㎡)							
구분			건물면적				토지면적
전용기준	분양구분	세대수	계	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59A	토지등소유자	110	122.0897	59.7827	24.8552	37.4518	34.6428
	보류시설	1					
	일반분양	67					
	임대	3					
59B	토지등소유자	12	122.4658	59.9173	25.0124	37.5361	34.7622
	보류시설	3					
	일반분양	2					
	임대	-					
59C	토지등소유자	33	122.029	59.5905	25.1071	37.3314	34.6672
	보류시설	1					
	일반분양	19					
	임대	2					

84A	토지등소유자	107	165.8437	84.9704	27.6424	53.2309	46.0968
	보류시설	2					
	일반분양	125					
	임대	-					
84B	토지등소유자	76	165.8437	84.9704	27.6424	53.2309	46.0968
	보류시설	3					
	일반분양	90					
	임대	-					
84C	토지등소유자	24	166.1218	84.8746	28.0762	53.171	46.2314
	보류시설	-					
	일반분양	39					
	임대	-					
84D	토지등소유자	23	166.1218	84.8746	28.0762	53.171	46.2314
	보류시설	1					
	일반분양	24					
	임대	-					
84E	토지등소유자	-	166.1218	84.8746	28.0762	53.171	46.2314
	보류시설	-					
	일반분양	12					
	임대	-					
84F	토지등소유자	4	166.1218	84.8746	28.0762	53.171	46.2314
	보류시설	-					
	일반분양	8					
	임대	-					
84G	토지등소유자	7	166.2165	84.9546	28.0408	53.2211	46.2497
	보류시설	2					
	일반분양	7					
	임대	-					
84H	토지등소유자	1	166.2207	84.9546	28.0337	53.2324	46.2327
		11	166.2165	84.9546	28.0408	53.2211	46.2497
	보류시설	-					
	일반분양	6					
	임대	-					

84I	토지등소유자	2	166.2165	84.9546	28.0408	53.2211	46.2497
	보류시설	-					
	일반분양	4					
	임대	-					
84J	토지등소유자	2	166.2165	84.9546	28.0408	53.2211	46.2497
	보류시설	-					
	일반분양	4					
	임대	-					
108	토지등소유자	55	208.5064	108.9843	31.2473	68.2748	57.3976
	보류시설	-					
	일반분양	1					
	임대	-					
합계		893	139,475.525	70,828.9149	24,274.7852	44,371.8249	38,927.9844

근린생활시설 (상가) 면적(㎡)					
구분		건물면적			토지면적
분양구분	호수	계	전용	공용	
토지 등 소유자	19	1,442.9327	731.2189	711.7138	402.7263
일반분양	4	344.2795	174.4667	169.8128	98.5893
합계	23	1787.2122	905.6856	881.5266	501.3156

바.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역 (분양받은 건축시설 또는 대지에 존속되는 담보권 등)

권리종류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계**
건수	13	-	-	**13**

7. 관계서류 열람 장소 :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02-811-7752)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10호

『2019.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2019.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선정결과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숭실대학교	황준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14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축과-7723(2019. 4. 9.)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기타사유)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부과예고 금액
1	매봉로2길 11 (상도동 7-182)	이*수	지상3층 3세대를 4세대로 세대수 증가(무단대수선)	1,007,280원

2.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6. 7.(15일간)

3.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4.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9. 6. 7.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시정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 :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15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알림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축과-7228(2019. 4. 3.)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반송(기타 사유)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비고
1	매봉로2길 13 (상도동 7-183)	이*수	지상3층 3세대를 4세대로 세대수 증가(무단대수선)	

2. 공고기간 : 2019. 5. 23. ~ 2019. 6. 6.(15일간)
3.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4.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9. 6. 6.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시정되어 시정촉구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 :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시정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16호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2008-307호(2008.9.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7.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5.7)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45호(2015.6.18)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67호(2017.8.2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4.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7.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고시 제2019-19호(2019.2.28.) 사업시행(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4.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5.23. ~ 2019.6.6.(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일대
3) 시행면적 : 102,557.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용구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흑석동, 중앙상가 5층)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5층~지상20층 아파트 26개동 1,7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임대아파트 338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 : 도로 15,245.6㎡, 공원 9,543.7㎡, 공공공지 4,245.9㎡, 사회복지시설 1,283㎡

다.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805)

2)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812-6737)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2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신 청 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인증번호
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조현철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135대형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LMT-5H-2L-135	서울동작 제8-9호
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조현철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194대형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LMT-4HS-3L-194	서울동작 제8-10호
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조현철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84대형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LMT-4H-1L-84	서울동작 제8-11호

끝.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27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에 의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경미한)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하고 고시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건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 05. 23. ~ 2019. 06. 07. (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6,2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김기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33, 3층 (노량진동)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8개월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10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지상29층, 3개동 421세대 (임대106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4,099.00㎡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1387),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2-5113)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관련 제도보완 이행요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 심사위원회 위원의 감사담당관 지정 및 외부위원 위촉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위원이 공무국외여행자 본인이거나, 공무국외여행자 직속 상관 및 직원인 경우 위원에서 제외 (안 제6조제4항)

❍ 위원회 구성 및 해산 시기 명시(안 제6조제5항)

❍ 서면심사의 제한 및 외부위원 수당지급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제4항)

❍ 외부기관 또는 단체 지원 여행 및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여행 제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항, 제2항)

❍ 귀국보고서 등 공개 명시화(안 제18조제1항)

❍ 상위 인용 법령 및 기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청탁금지법」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9. 5. 23. ~ 6. 12. (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행정영향평가

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도록 개정 보완하여 청렴한 행정 구현

나. 대외(주민)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해외 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기준 정비 등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부정부패 경각심 제고 및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및 향상 도모

6.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1208, FAX: 820-1188, E-mail: tooduli00@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입법예고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기업 임원”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교육훈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1과”을 “별표와”로 한다.

제4조 중 “여행하는 자를”을 “여행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행 목적지(방문국,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5인으로”을 “7명 이내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국장급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외부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를 심사할 경우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인을 위촉한다.

④ 위원이 공무국외여행자 본인이거나 공무국외여행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인 경우 위원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속하지 않는 국장이나 부서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통괄”을 “위원회 업무를 총괄”로 하고,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주관 국장 등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가 있거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회는”를“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된 자”를 “의결된 사람”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를 “공무국외여행 방침 수립시”로 하고, “행정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구자체”를 “구 자체”로, “제1항의 관계 실·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을“행정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억제한다”를 “제한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공무국외여행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여행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 등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여행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같은 조 제3항(종전 제1항) 중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를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 4일 이내
2. 아메리카, 유럽 등 그 밖의 지역 : 6일 이내

제15조제1항 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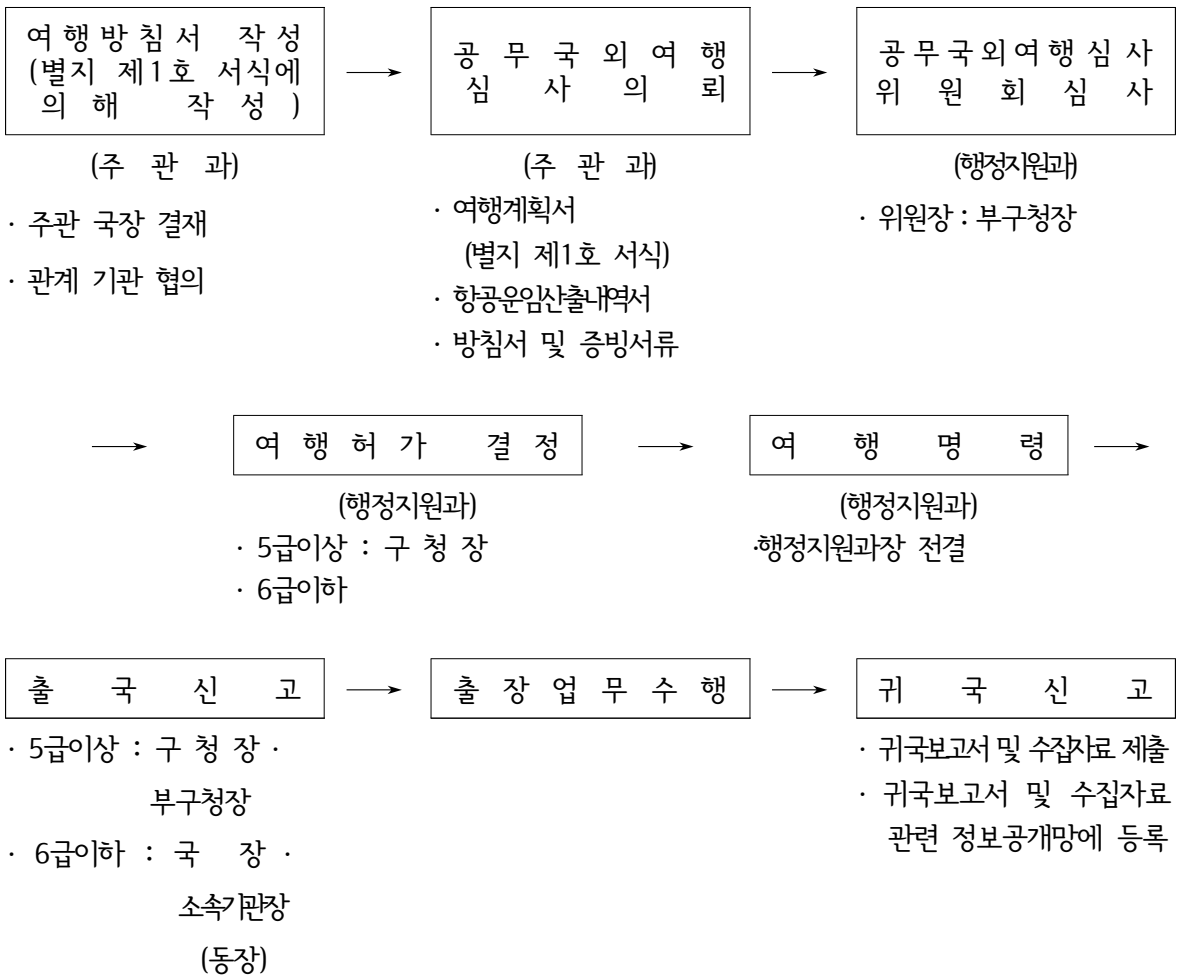
출하고, 귀국보고서 등을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 구청장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 표]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계획 요약

여 행 목 적					
여 행 동 기 및 배 경					
여 행 기 간	20 · · · ~ 20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직 급				
	여 행 경 비				
여 행 경 비 부 담 기 관					
기 타					

* 작성요령

1. 여행국의 ( )는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경유국을 말함)을 기재

2. 소속은 담당관·과·동까지 기재

2. 여행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하여 수행하는 세부내용(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나. 여행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다.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일=$	$×일=$	$×일=$			

3.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자료제출 확인

1. 여행계획

소 속 기 간			연락처 전 화			동행인원 (본인포함)		
여 행 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여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목 적								

2. 자료수집계획

3.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최근 3년 이내 재여행자에 한함)

성 명	여 행 기 간	여 행 목 적	제 출 여 부	
			보고서	자 료

작성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

위와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기업 임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기업 임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2조(적용대상)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교육훈련 ---------- ----------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 ① (생 략)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와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여행하는 사람을 ----------.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1. 여행의 필요성 2. 여행자의 적격성 3.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4. 여행인원 5. 여행경비 6. (생 략)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1. (현행와 같음) 2. 여행 목적지(방문국,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현행와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국장급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1명----------7명 이내로----------.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국장급 공무원 4명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외부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를 심사할 경우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인을 위촉한다.
<신 설>	④ 위원이 공무국외여행자 본인이거나 공무국외여행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인 경우 위원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속하지 않는 국장이나 부서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 ----------위원회 업무를 총괄----.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주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주관국장 등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가 있거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 ----------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사절차) ① (생 략) 1. (생 략)	제9조(심사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항공운임증명서(G. T. R) 3. (생 략) ②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명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국외여행을 명한다. ③ (생 략)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현행과 같음) ②----------의결된 사람----------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여행방침 사전협의) ① 주관국장 등은 공무국외여행방침수립시 미리 행정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자체 계획이 아닌 시 및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는 최초의 참가 협의단계부터 제1항의 관계 실·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는 참가를 억제한다. ④ (생략)	제10조(여행방침 사전협의) ① -------- ----- 공무국외여행 방침 수립시 --- 행정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 ----------. ② (삭 제) ③ 구 자체 ---------- 행정국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제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여행목적 및 필요성 심사) <신 설>	제11조(여행목적 및 필요성 심사) ①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공무국외여행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여행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 등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여행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원	③---------- 소명되지 아니하

현 행	개 정 안
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③ (생 략)	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⑤ (현행 2항 및 3항과 같음)
제13조(여행자 심사) ①·② (생략) ③ 동일 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2명----------
제14조(여행기간 및 시기심사) ① (생략)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 4일 이내 2. 구미 등 기타지역 : 6일 이내 ②·③ (생략)	제14조(여행기간 및 시기심사) ① (현행과 같음) 1.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 4일 이내 2. 아메리카, 유럽 등 그 밖의 지역 : 6일 이내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여행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여행경비심사)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귀국보고서) ①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귀국보고서) ① ----------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귀국보고서 등을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 구청장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1996.11.28., 2018.11.29.〉 **공무국외여행허가절차** 여행방침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작성) →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 → 구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심사 → (주관과) ·주관국장 결재 ·관계기관 협의 (간사 : 행정지원과장) ·여행방침서 ·항공운임증명서 ·증빙서류 (위원장 : 부구청장) → 여행허가 결정 → 여 행 명 령 → (주 관 과) ·5급이상 : 구청장 ·6급이하 : 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전결	[별 표] **공무국외여행허가절차** 여행방침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 →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심사 (주관과) · 주관국장 결재 · 관계기관 협의 (주관과) ·여행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항공운임증명서 ·방침서 및 증빙서류 (행정지원과) ·위원장 : 부구청장 → 여행허가 결정 → 여 행 명 령 → (행정지원과) ·5급이상 : 구청장 ·6급이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전결

현 행

→ 출 국 신 고 → 출장업무수행 → 귀 국 신 고

·5급이상
: 구청장·부구청장
·6급이하
: 실국 장, 소속 기관장(동장)

·귀국보고서 제출
·수집자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계획 요약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 경					
여행기간	19 · · · ~ 19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여행경비	$	$	$	$
여행경비 부담기관					
기 타					

* 작성요령

1. 여행국의 ( )는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경유국을 말함)을 기재
2. 소속은 담당관·과·동까지 기재

2. 여행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하여 수행하는 세부내용(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개 정 안

출 국 신 고 → 출장업무수행 → 귀 국 신 고

·5급이상
: 구청장·부구청장
·6급이하
: 국장· 소속 기관장(동장)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계획 요약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 경					
여행기간	20 · · · ~ 20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여행경비				
여행경비 부담기관					
기 타					

* 작성요령

1. 여행국의 ( )는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경유국을 말함)을 기재
2. 소속은 담당관·과·동까지 기재

2. 여행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하여 수행하는 세부내용(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현 행

나. 여행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다.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	$	$×일 =$	$×일 =$	$×일= $	$	$	$

3.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자료제출 확인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연락처 전 화		동행인원 (본인포함)	
여 행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행목적					

2. 자료수집계획
3.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최근 3년 이내 재여행자에 한함)

성 명	여행기간	여 행 목 적	제 출 여 부	
			보고서	자 료

작성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9 년 월 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

개 정 안

나. 여행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다.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일 =$	$×일 =$	$×일= $			

3.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자료제출 확인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연락처 전 화		동행인원 (본인포함)	
여 행 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행목적					

2.자료수집계획
3.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최근 3년 이내 재여행자에 한함)

성 명	여행기간	여 행 목 적	제 출 여 부	
			보고서	자 료

작성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37호

설계공모 공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신대방1동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용 역 명	○ 신대방1동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계용역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길 42 ○ 대지면적 : 165.4㎡(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42㎡ [±3% 및 예정공사비 범위 내 조정가능]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로 건축(철거 포함),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일체 ※ 지반조사비, 측량비, 내진설계비, 철거설계비, 석면조사비, BF 예비인증비 등 포함
예정공사비	○ 1,104,000천원(부가세, 철거, 폐기물처리비 등 포함)
설 계 비	○ 62,168천원(부가세 포함) ※ 예비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는 발주청 부담, 이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됨
공모목적	○ 신대방1동 및 인근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 다문화 집중 거주지역에 특화된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공동응모 가능, 과반수 초과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 ○ 응모 신청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외국건축사면허업체는 위 요건을 가진 국내건축사(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상세내용 설계공모지침서 참가자격 참조

응모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년 5월 31 (금) 09: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건축과(본관 2층) ※ 설명회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단, 과업내용서는 추후 당선자와 설계계약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음)
등록서류	○ 응모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등록 시) ※ 신분증 지참(현장 응모신청 오시는 분) ○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 받아 제출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 : 2019년 6월 3일(월) 09:00 ~ 18:00 ○ [질의 회신] : 2019년 6월 7일(금) 구 홈페이지 건축과 행정자료실에 일괄 게재 ※개별회신 없음
공모안접수	○ 2019년 7월 8일(월) 09:00~18:00 동작구청 건축과 건축시설팀(본관 2층)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 심사위원 명단 공개(공고시 동작구청 건축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공개) ○ 당선작 공개(동작구청 건축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공개)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최우수작) 1점 : 해당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및 상장 ○ 입상작 : 응모작품 수에 따라 상장 및 보상금 지급
기 타	○ 설계공모지침서 등 열람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건축과/행정자료실】 ※ 건축과 행정자료실 : 동작구청 홈페이지 → 부서별 홈페이지(하단) → 건축과 선택 후 이동 → 행정자료실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입찰보증금 없음
문 의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 동작구청 건축과 ○ 전화 : 02) 820-1393(담당 서완석), 팩스 : 02)820-9984, e-메일 : sws8335@dongjak.go.kr

인사발령

[발령 제96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서	직급
1	**김재인**	복직을 명함 사당제1동 근무를 명함	흑석동	지방사회복지서기

2019. 5. 19. 字

[발령 제97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서	직급
1	**유 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5월20일부터 2020년5월19일까지)	대방동	지방사회복지서기

2019. 5. 20. 字

[발령 제98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서	직급
1	**이리나**	복직을 명함 신대방제2동 근무를 명함	사당제4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019. 5. 21. 字

[발령 제99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서	직급
1	**임지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동작구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근무를 명함	조달청	행정서기보
2	**이다혜**	조달청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2019. 5. 27. 字.

동작구보 제1601호 동작구



www.dongjak.go.kr

동 작 구